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발췌본

제 4 장 학위논문

제 1절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8조(외국어시험)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제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일어 및 서반아어, 한국어, 한문 중에서 택일 하되 박사과정은 영어와 위 언어 중 택 1하여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한다.

③ 외국인은 자국어를 외국어로 택할 수 없으며 한국어를 응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타의 외국어, 한문으로 대치하여 응시하려는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 시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출제한다.

⑥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본교 국제어학원 주관으로 매년 일정 횟수를 시행하며, 그 외의 과목들은 대학원 주관으로 매학기 각 1회만 시행한다.

⑦ 외국어시험 중 영어외의 과목은 사전(전자사전 및 전자수첩 제외)을 지참할 수 있다.

⑧ 외국어시험은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⑨ 외국어시험은 소정의 성적 이상(본교 국제어학원 강좌 수강 시는 B 이상의 성적 취득)을 합격점으로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시험(영어제외)을 면제할 수 있다.

1.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를 해당 과정 입학 후 수강하여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한국어는 본교 국제어학원 또는 세종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 정규과정(2급 이상 과정)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S-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3. 기타 외국어는 <표 1>과 같이 취득한 자

4. 제2항의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한 내국인. 다만, 면제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는 언어는 학과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박사과정의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을 제외한 학과의 재적생은 제2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6.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대학수학준비과정(한국어) 또는 한국이해과정(한국어)) 수료 후 이수인정 기준을 충족한 자

⑪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를 해당 과

정 입학 후 수강하여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본교 국제어학원 주관 영어시험에서 소정의 성적 이상(TOEIC 800점, TOEFL 550 점)을 취득한 자

3. TOEFL IBT 80점(My Best Score 포함), PBT 550점, TEPS 660점(NEW TEPS 361점), IELTS 6.0점, TOEIC 800점 이상의 성적을 면제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자.

4. 제10항 제4호 해당자

⑫ 제10항 내지 제11항에 의한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행정실에서 공지한 절차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